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0. 23) 상정
-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0. 23) 수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위원회 김 미 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주요 시책사업 등 시정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가진 주부들로 하여금 점검·평가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 점검·평가와 더불어 시민여론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정 추진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등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부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주부 시정평가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제보
 - 시 행사에 대한 평가
 -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미래화에 대한 시책과 아이디어 발굴
 - 각종 부조리 행위 신고
 -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
- 주부 시정평가단의 구성과 임기, 위촉과 해촉,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까지)
 - 주부 시정평가단의 회의,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7조 까지)
 - 주부 시정평가단의 특전,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부터 제9조 까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추상적 표기 조문과 일부 조항의 삭제에 대하여 동의 하는지?	○ 안 제2조의 3호와 5호의 삭제에 대하여 동의하며, 기타 추상적 표기 및 일부 조문 등의 수정에 동의를 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171호
의결 년월일	2007. 10. 26 (제139회)

발의년월일 : 2007. 10. 16.

발 의 자 : 김미숙의원등10
인발의

1. 수정이유

-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가 실제 시정평가에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평가단의 기능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고 추상적인 조문이나 문구 등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의 기능중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제보’를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전달’로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미래화에 대한 시책과 아이디어 발굴 건의 및 제보’를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로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을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등’으로 수정함.
(안 제2조 제2호, 제4호, 제6호)
- ‘시 행사에 대한 평가’와 ‘각종 부조리 행위 신고’는 삭제함.
(안 제2조 제3호, 제5호)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호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제보’를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전달’로 수정함.

안 제2조 제3호 ‘시 행사에 대한 평가’는 삭제함.

안 제2조 제4호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미래화에 대한 시책과 아이디어 발굴 건의 및 제보’를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로 수정함.

안 제2조 제5호 ‘각종 부조리 행위 신고’는 삭제함.

안 제2조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을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등’으로 수정함.

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동일함’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기능) (생략)</p> <p>1. (생략)</p> <p>2. <u>시정에 대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제보</u></p> <p>3. <u>시 행사에 대한 평가</u></p> <p>4. <u>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미래화에 대한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 및 제보</u></p> <p>5. <u>각종 부조리 신고</u></p> <p>6. <u>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u></p>	<p>제2조(기능) (제정안과 같음)</p> <p>1. (제정안과 같음)</p> <p>2. <u>시정에 대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전달</u> (삭 제)</p> <p>3. <u>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u> (삭 제)</p> <p>4. <u>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등</u></p>

[수정안 포함]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주요시책 및 주민여론 등에 대한 주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천시주부시정평가단(이하 “주부시정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주부시정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2.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전달
3.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 등) ① 주부시정평가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해촉) ① 단원은 시정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으며,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갖춘 시에 거주하는 주부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주부시정평가단원 중에서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관외 전출 시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주부시정평가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시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2조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주부시정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특별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주부시정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시의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에서는 인터넷·전화·서신 등을 통하여 주부시정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의 시책사업 수립 시에는 주부시정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적극 반영한다.

제8조(표창) 주부시정평가단원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자 또는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주부시정평가단원 중에서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별히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주부시정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